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해 개방하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괄적인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원 학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2021년 171교 → 2022년 119교)

이번 조례안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했으며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작성해 게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개방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